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11. 19 선고 2021가단51766(본소), 2021가단64328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 · 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용

피고(반소원고)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택

담당변호사 강길복

변 론 종 결 2021. 10. 22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9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29,663,676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9. 18.부터 같은 해 11. 19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 20%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

111,840,809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1. 18.부터 이 사건 2021. 10. 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74,159,1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의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1. 기초사실

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,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다.

가. 안성시 C 답 2,450.5㎡(2013. 3. 25.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환지 전에는 D 답 2,450㎡)와 안성시 E 답 1,062.5㎡(2013. 3. 25.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환지 전에는 F 답 1,111㎡)(이하 위 두 부동산을 통틀어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는 망 G의 소유였는데, 농어촌진흥공사가 1998. 12. 1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. 12. 1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가 1998. 12. 2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. 12. 22. 매매(매매대금 합계액 32,297,000원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2011. 5. 30. 3,000만 원, 2014. 12. 19. 2,000만 원, 2018. 2. 13. 1,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모두 망 G에게 대여하였고, 망 G은 2019년경까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납부하였다. 피고는 2019. 6. 17. 망 G에게 추가로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은 2021. 1. 12. 합병되어 안성시 C 답 3,513㎡가 되었고, 2021. 1. 18. I, J, K,

L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2. 28. 매매(거래가액 186,000,000원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피고는 I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무렵 그 매매대금으로 H조합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의 대출원리금 합계 66,159,191원(= 각 대출금 합계액 60,000,000원 + 각 대출금 이자 합계액 6,159,191원)을 변제하였다.

마. G은 2019. 10. 10. 사망하였고, 망 G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M과 자녀인 원고가 있었는데, 원고와 M은 2021. 1.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.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본소 청구

1) 주장의 요지

가) 망 G은 2002. 10. 30. 피고에게 3,030만 원을 대여하였다.

나) 피고는 위 차용금으로 같은 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안성시 N 답 3,503㎡를 매수하여, 같은 해 11. 8.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) 피고는 2002. 10. 30.경 망 G과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환을 완료한 후 망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.

라)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86,000,000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21. 1. 18.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망 G과의 위 대물변제 약정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.

마) 따라서,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86,000,000원에서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구상금 등 채무액 74,159,191원을 공제한 111,840,809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에 이른 2021. 1. 18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망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

대한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반소 청구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망 G은 피고에게 피고가 변제한 위 각 대출금의 대출원리금 합계액 66,159,191원 및 차용금 8,000,000원의 합계 74,159,1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는, 원고가 망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위 돈 전부의 지급을 구하나, 원고가 다른 상속인인 M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,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 G의 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인 5분의 2 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.

3) 따라서, 원고는 피고에게 29,663,676원(= 74,159,191원 × 2/5, 원 미만 버림)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의 송달 다음날인 2021. 9. 18.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11. 19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장구